

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관련 조치방안 안내

출처 : 환경부

◆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에 따라 금년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적용 제외대상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시행 이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.

1. 제도 현황

◎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(‘20.3.25일~)

○ (검사대상) 허가·신고 대상 축산농가(신고규모 미만 제외), 가축분뇨처리업체(공공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)

○ (검사기준) ① 1,500㎡미만 배출시설 : 부숙중기
② 1,500㎡이상 배출시설 : 부숙후기 or 부숙완료
③ 가축분뇨처리업체 : 부숙후기 or 부숙완료

○ (검사주기) ①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분뇨처리업체는 연 2회
②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

* (검사기관) 지자체 농업기술센터, 한국환경공단 및 민간시험기관 등

◎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행정처분 대상

○ (행정처분) 위반사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

| 위반사항(배출시설) | 행정처분 | |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| 1차 | 2차 | 3차 | |
| 1) 부속도 부적합 | | | | |
| - 허가규모 | 100만원 | 150만원 | 200만원 | |
| - 신고규모 | 50만원 | 70만원 | 100만원 | |
| 2) 검사주기 | | | | |
| - 허가규모(6개월마다) | 50만원 | 70만원 | 100만원 | |
| - 신고규모(1년마다) | 30만원 | 50만원 | 70만원 | |

2. 조치 방안

①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 적용 제외 대상 산정기준 마련

○ (근거) 가축분뇨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*

* 퇴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규모 미만(1일 최대 300kg미만)의 퇴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는 경작농가에 제공 가능

○ (산정) 검사적용 제외 대상 기준(1일 300kg)을 감안, 축종별 축사면적 또는 마릿수(배출 원단위)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

* 기본적으로 축종별 축사면적을 우선 기준으로 하되, 축사면적보다 실제 과대(過大)·과소(過小) 사유하는 경우 사유 마릿수 적용

- 검사제외 대상 축산농가가 경작농가(축산농가의 자가경작 포함)에 퇴비를 제공하면 퇴비액비화기준(법 제13조의2)의 행정처분 면제

* 다만, 경작농가는 법 제10조(퇴비·액비의 처리의무)에 따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함 (위반시 행정처분 가능)

◆ 산정방식(한우 이외 다른 축종도 동일방식)

-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('09년) 상의 마리당 표준 축사면적, 표준 분뇨량(배출 원단위) 기준 적용

* (예 1) 한우 표준 분뇨량 13.7kg/일 적용 시 약 22마리 산출

* (예 2) 한우 22마리를 표준 축사면적 12㎡/마리로 계산 시 면적 약 264㎡

- (조치) 검사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부속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 집중 살포(봄철 등) 전에 검사(1회이상) 권고·홍보

2 제도시행 이후 계도기간 부여

- 부속도 제도는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'20.3.25일부터 정상 시행
 - 다만, 제도시행 초기 지자체·축산농가 등의 준비부족*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(분뇨처리업체는 제외)
 - * 지자체 검사인력·장비 확충, 축산농가 퇴비사 시설개선 등에 시일 소요
- '20.3.25일부터 1년, 동 기간 중 계도 위주 운영
 - 계도기간 중 부속기준 미달 퇴비 살포, 부속도 검사(1~2회/연) 위반 시 행정처분 유예(현장지도)
 -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속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반복(2회이상) 악취민원 유발,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 가능
- 매년 상·하반기 가축분뇨 관련 합동(지자체, 환경청) 및 수시점검을 통해 부속도 검사 등 제도 준수사항* 집중 지도·홍보 추진
 - * 적정 퇴비사 확보, 퇴비사 타용도 사용 제한, 부속도 검사 의뢰방법 등
-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맞춤형 관리를 위해 농가별 이행계획서 작성·점검, 미흡한 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 등 수행(세부일정 추후 계획)